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65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만주사변에서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입은 피해 조사와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일제 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실무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사항 등을 처리함 (안 제2조)
- 나.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충청북도지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안 제3조)

- 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안 제4조)
- 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안 제5조)
- 마. 실무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둠 (간사는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안 제7조)
- 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존속 (안 제10조)

3. 의안전문 : 불임

4. 관계법령 발췌 : 불임

5. 입법예고결과 의견 : 의견 없음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부지사·자치행정국장·복지환경국장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②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또한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시·군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충청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간)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1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의 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희생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